

문서번호	기획예산과-7337	주무관	법무팀장	기획예산과장	기획재정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결재일자	2016.5.19.	송수연	이기호	조상연	이상형	하철승	05/19 박경수
공개여부	부분공개	협 조					
보도여부							

---

## 서울특별시 강북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개정계획

---



2016.5.16.

강 북 구  
(기획예산과)

# 서울특별시 강북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개정계획

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사항을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개정하고,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 수집 근거가 없는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

## I 개정 이유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28조제2항에 따라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사항을 규정하고, 「조례의 제정·개정 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」 개정에 따라 관련 별지서식을 정비하고자 함.

## II 주요 내용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28조제2항에 따라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사항을 규정(안 제20조)
- 법령에 수집 근거가 없는 별지서식의 “주민등록번호, 국내거소신고번호, 외국인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개정  
(별지 제3호서식 ~ 별지 제8호서식)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(안 제1조 외)

## III 관계 법령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16조, 제28조
- 「조례의 제정·개정·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」

## IV 참 고 사 항
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부패영향평가: 원안 동의
- 성별영향평가: 개선권고
  - 서식 별지 3호서식 ~ 8호서식에 성별 항목 추가 개선권고: 불수용  
(관련 서식은 상위법령인 「조례의 제정·개정·폐지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」에 규정된 서식임)

## V 추진 일정

- 2016. 5. . . ~ 2016. 6. . . : 입법예고
- 2016. 6월 중: 조례규칙심의회 심의
- 2016. 7월 중: 공포

붙 임: 서울특별시 강북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 끝